

제5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

대림씨엔에스주식회사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개최일시: 2017년 03월 24일 (금) 오전10:00
2. 개최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, LW컨벤션 3층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안건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
나. 부의안건

- 제1호 의안 : 제51기(2016.01.01~2016.12.31)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첨부 3)
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첨부 4)
-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- 별첨 : 1. 정관 일부 변경의 내용
2. 이사 선임 후보자 약력. 끝.

2017. 03. 08.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6
대림씨엔에스주식회사
대표이사 송 범

[첨부 1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재 정관
<p>제 8 조의 2 (신설)</p> <p>제 47 조 이익배당</p> <p>1.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,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2.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

변경 정관
<p>제 8 조의 2 주식의 소각</p> <p>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(다만, 해당 사업연도말 상법 제 46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)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 <p>제 47 조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</p> <p>1.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,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2.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3 월, 6 월 및 9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. 3.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4.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2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무상증자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

[첨부 2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이사 후보자

성 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 여부	주요약력
이병락 (사내이사)	1958 년 7 월	3 년	재선임	(現) 대림씨엔에스 콘크리트사업 영업담당 전무 (前) 대림씨엔에스 콘크리트사업 영업담당 상무